

2025년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 시행공고

경기도 바이오기업의 R&D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 바이오기업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

지원개요

지원내용	지원형태	지원수	사업규모	
			기업당	총액
수요기술에 대하여 기업·대학(병원)·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공동연구 수행	연구비 지원	4개사	최대 1억원	최대 4억원

사업기간 : 협약일 ~ 2025년 12월

수행기관 : 전문기관-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협업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 주관기관(참여기업) : 도내 소재 바이오기업
- 공동연구기관 : 대학 또는 의료기관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세 부 내 용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5.3월	· 공고주체: 경기도 · 바이오 기업 R&DB 종합지원사업 -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		
과제 신청서 제출·접수	2025.3월	· 신청기업 → 경과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	2025.4월	· 경과원 →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선정 3주일 이내 협약 체결
↓		
협약체결	2025.4월	· 경과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기관
↓		
연구수행	2025.4월~12월	· 공동연구: 경과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기관
↓		
공동연구 참여기업 중간점검	2025.10월	· 경과원 → 참여기업 - 공동연구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제출	2025.12월	· 참여기업·공동연구기관 → 경과원 · 참여기업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공동연구기관 : 정산보고 및 증빙서류 등
↓		
사후관리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	· 참여기업 → 경과원 · 성과관리 (종료 후 3년) · 성공기술료 납부(해당 시)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세부내용

- **지원내용** : 도내 바이오기업의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연구 인프라(연구장비, 시설, 시험·평가 지원, 전문인력 등) 활용 및 산·학(병)·연 공동연구 수행
- **공동연구기관** : 신청기업이 대학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
- 신청서에 공동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활용방안, R&DB 실적 등 기재
- **연구비 배분** : 참여기관별 역할, 활용 가능한 연구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배분, 단, 한 기관에 50% 초과 배분 불가

※ 재료비 등 연구에 직접 사용하는 비용 계상, 단 장비구입 및 인건비는 계상불가

- **지원분야** : 후보소재 발굴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3단계 중 택일
 - (초기단계) 소재로부터 성분분석·기능성 검증을 통해 후보소재 발굴
 - (중기단계) 독성·안정성 등 비임상평가, 정부 제품 인허가 획득 지원
 - (후기단계) 시제품 제작, 표준화, 제제(물약, 알약, 패치 등)연구 등

3.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기도 기업
 -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 경기도내 소재한 기업
 - 신약 또는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R&D 수행중인 기업
- **신청기간** : 2025. 3. 11.(화) 09:00 ~ 4. 7.(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 전자메일로 제출(eugene@gbsa.or.kr)
 - ※ 평일 기준(주말 또는 공휴일 제외) 2일 이내 접수안내 메일 발송
 - 우편 또는 방문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서식 제1호	hwp파일 및 직인날인된 PDF파일
	② 참여의사확인서, 청렴계약이행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③ 과제정보공개 동의 및 이중수혜금지 서약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④ 기업 범위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⑤ 기업 범위반 사실(부존재)여부 협약서	(첨부)서식 제2호	직인날인된 PDF파일
	⑥ 사업자등록증 및 경기도 소재 기업 입증가능서류(공장등록증/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인증서 등)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⑦ 최근 2개년도(2023-24) 결산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공고 마감일 이내 제출
선택	① 기업의 범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첨부)서식 제2호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작성

②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목록	자율서식	증빙 제출
③ 가산점 적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미제출 시 가산점 미적용)	특허, 인허가증, 기타 가산점 인정 증명서류	접수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지난 경우 제외

※ 향후 선정기업에 한하여 미제출 서류는 별도 제출 안내 예정

4. 지원제한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 및 협약된 이후라도 지원제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협약 해약 및 지원금 즉시 환수 조치

- 공고일 [2025. 3. 11.(화)] 기준,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등이 다음 각 호의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격이 부합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가 지원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존 공고 또는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
 - 신청과제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음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 판단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 이미 지원되었거나 “중단(불성실수행)” 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 신청과제의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 토 기 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2.항과 3.항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을 (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으로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 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신청기업, 신청기업대표,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5. 선정방법

□ 사전적격심사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제중복성, 제제사항 등
- 접수번호 안내 시 사전적격심사 완료 여부 함께 공지
(신청마감 후 7일 이내)
- 사전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 과제 여부 결정

□ 지원기업 선정 : 2025년 4월 2~3주차 예정

- 외부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및 발표*(자료)로 평가 진행

* 평가 방식에 대하여 사전적격심사 결과와 함께 추후 공지

- 목표의 실현가능성, 시장성 및 사업화(제품화) 전략, 연구성과 활용계획에 대해 주요하게 평가 계획
- 선정방법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가산점 적용 :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 최대 5점
- **범위반기업 확인 및 감점** : 신청기업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대면심사 **평가점수의 20%를 감점** 하여 평가 총점으로 적용,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범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범 위반일 기준 사업 취소
- ※ (참고) 범위반 적용법률 참고
- 미 선정 기업 중 60점 이상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하며, 선정된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사업 계획	목표달성 가능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목표달성 실현가능성	15
	세부추진 내용의 적합성	세부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합성	15
		내용 및 추진전략, 일정의 타당성	15
	기술의 사업성	기술의 시장성 및 기술성	15
		기술의 사업화(제품화) 및 마케팅 전략	10
기대 효과	매출 및 생산성 증대효과		5
	고용창출 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5
	기술이전 또는 연구성과 활용 계획		10
가산점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고		최대 5

※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적용기준
 - 평가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적용 불가
 - 평가위원 최종 평균점에 가산점 적용
 - 적용대상 :
 - 사회적 경제(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1점)
 - 경기도가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1점)
 -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1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1점)
 - 기업 자체 기술력을 인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일체(지식재산권 5건 이상, 각종 인증 및 지정서 등)(1점)
 - 본 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 (1점)
 - 경기도내 소재 본사, 지사(캠퍼스) 위치한 공동연구기관(대학 또는 의료기관) 지정(1점)
 -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1점) * 소재지 증명 서류제출 필수
-

□ 선정안내 : 선정평가 이후 10일 이내

- 해당 일에 신청서 상의 전자메일로 개별 통지함
- 신청서의 오류기재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6. 기타사항

□ 성과귀속 및 관리

- 전문기관이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한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의 결과물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사용·양도·대여 등의 사유 발생 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성과(결과)보고서, 물질·제품, 공정개선도 등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성과이전 대상 포함
-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게 되는 지적재산권은 전문기관(경과원) 단독 출원하거나 협의에 의해 기업과 공동출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개발의 용이성을 위하여 양 기관이 협의 하에 특허 처분에 대한 양수도 가능
- 기술료는 「경기도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사용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의 참여기업은 지원 후 3년간 사업화, 제품화 실적 등 성과활용 조사 및 보고 요청 시 경기도 또는 경과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참여기업은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수요처에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음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 제외** 또는 **과제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지원 자격(예: 경기도 외로 주소이전 등)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2025년 경기도 R&D 지원사업의 중복 선정 불가

- **R&D 졸업제 시행** :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 기준년도 : 2020년 과제부터 적용
 - 해당 기업은 2년간 지원 대상 제외

- **이행보증보험 가입**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관은 도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미가입 시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
 - 발급수수료는 자부담 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으로 인정

- **도지원금의 부정수급 시 제제 조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환수 및 제제부가금(사용액의 5배 이내) 부과
 - 부정행위 기업 및 연구책임자 명단 공개
 - 연구부정행위자는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영구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참여기업 기업부담금 기준**
 - 기업부담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름

분 류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의 현금 부담 기준
대 기 업	50% 이상	15%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	13% 이상
중소기업	25% 이상	10% 이상

※ R&D 수행 및 투자 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 기준 적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7.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연구개발팀
 - 전자메일 : eugene@gbsa.or.kr, ○ 전화번호 : 031-888-6890

별첨 : (서식1) 2025년 수요기술 산학연(병) 공동연구 지원 신청 및 계획서 1부.
(서식2) 기타 제출 서류 모음 1부.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조례에 따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 (목적)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기업 선정의 공정성 제고 (조례 제1조)
- (법위반 적용 법률) 공정, 노동, 환경, 납세 4개 분야 11개법률 (조례 제2조)
 - 1)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2)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법위반 조회기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이력 조회 (조례 제6조)
 -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 (적용대상)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 (적용방법)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법위반 사실 확인)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